

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주요 법적근거

- 경기도 세정 13400-350('99. 12. 16)호의 시·군세 감면조례계획 및 개정(안) 통보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
-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법
 - 제5조 제1항-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에서 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, 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·운영, 가공품의 수출촉진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-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 - 제28조의 2 - (아파트형 공장의 설립등) 내용 생략
 - 제28조의 5 - (아파트형 공장에서의 입주) 내용 생략
- 조세특례 제한법
 - 제121조의 2 제4항-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·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·등록세·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.

1. 취득세·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
터 5년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
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
(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“감면대상세
액”이라 한다)의 전액을, 그 다음 3년이내
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
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
2.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동안은
당해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
을 곱한 금액(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
“공제대상금액”이라 한다)의 전액을, 그
다음 3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
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

제5항-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제1항 각호
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·보유하는
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
고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·등록세·재산세
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그
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
서 공제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
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
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
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
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
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.

1.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
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
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
액을 감면

2.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, 그 다음 3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
3.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, 그 다음 3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

2. 행정조치사항

- 입법예고 : 2000년 1월 10일

3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과 행정자치부에서 감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·군의 조례 개정안을 통보한 내용이 주로
-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관련된 감면 확대, 교통란 해소에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등을 삭제등
-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